

광주광역시서구오수·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1. 제안이유

-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15조(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)규정이 법률 제5864호('99. 2. 8)호 삭제되어 광주광역시서구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
-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('99. 8. 6) 및 시행규칙('99. 8. 9)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시행령 【별표 8】에 명시되어 광주광역시서구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과태료부과기준삭제 및 일부 규정을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제4조제2항 중 가축의 정의를 축산법의 규정에 의거 정의하였으나 개정된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의거 정의 (소·돼지·젖소·말·닭·오리·양 및 사슴)
- 제7조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
- 용어 중 오수정화시설이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가 단독정화조로 변경

3. 검토의견

- 1999. 8. 10.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중에 있는 본 조례 개정안은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
- 주요내용으로는
가축의 정의를 종전에는 축산법의 규정에 의거 정의하였으나,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가축의 정의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(소·돼지·젖소·말·닭·오리·양 및 사슴)로 개정되어 본 조례안 제4조에 “개”와 관련된 “도견장, 방법용, 애완용”을 삭제하였습니다.

그리고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개정으로 조례안 제2조 청소이행통지 대상의 “정화조,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”을 “단독정화조,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”로 개정하였으며

-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「별표 8」에 규정되어 상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 제7조의 “과태료 부과기준”을 삭제.

따라서 본 개정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해 일부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는 것으로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 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